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63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 안태준 · 문진석 · 송기헌

이광희 · 염태영 · 소병훈

정준호ㆍ허 영ㆍ오세희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자동차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차량 선택 시 자녀의 탑승 안전은 최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일반 5인승 차량으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차량탑승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부착 의무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가족 전체가 일반 5인승 차량에 모두 탑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족친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 중에 1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자가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6명 이상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가족친화를 위한 다자		
	<u>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①</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		
	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3명 이상		
	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 중에 1		
	3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자가 자녀양육		
	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6명 이상인 자동차		
	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